

—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3월 3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3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4월 3일

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무인민원발급제도 시행을 위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하여 민원인 편의 확대.

다. 주요내용

- 일반 공인에 전자문서(무인발급기)에 사용할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하는 내용(제2조제6항 신설)

라. 참고사항

- 사무관리규정 제3조, 제36조(전자 관인)
-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지침(구미시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임.

-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게 될 대상민원(총 31종)에 대한 전자로 이미지 한 공인을 사용하게 될 근거 조례임.
- 2001년부터 단계별로 발급민원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정보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